

의안번호	2210432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9.8.
추계번호	25B304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예방진화대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15억 2,500만원(연평균 23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안 제37조)		2,305	2,305	2,305	2,305	2,305	11,525	2,305
	국비	1,124	1,124	1,124	1,124	1,124	5,620	1,124
	지방비	1,181	1,181	1,181	1,181	1,181	5,905	1,181

주: 1.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산불예방진화대의 규모와 운영방식이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2025년 기준 위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산불예방진화대의 규모·운영방식 및 위험근무수당 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진화대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국고보조율 40% 가정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 (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보수와 위험근무수당 및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3항)	
2	안 제55조의2 (산림항공기 기령 등)	산림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이하 이 조에서 “기령 및 내구연한”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령 및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항공안전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는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제2항)	
		정부는 기령 및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 (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	- (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에 방진화대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추계								
2	안 제55조의2 (산림항공기 기령 등)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제작사에서 정한 기령 및 내구연한과 다르게 정할 경우, 기체 및 부품의 교체·정비 등의 횟수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령 및 내구연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이 국가의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5년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항공기는 총 50대이며 이 중 29대의 KA-32 헬기는 기체에 대하여 제작사에서 정한 내구연한(비행시간 기준)이 있으나, 나머지 기종의 경우 제작사에서 정한 기체의 내구연한은 없고, 주요 장치·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음 - 산림청에 따르면, 제작사에서 정한 산림항공기의 장치·부품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4항¹⁾에 따라 감항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장치 및 부품을 교체하고 있음 - 2024년 결산 기준, 산림청의 산림항공기 부품 교체 및 정비비용은 174억 7,200만원임 <최근 3년간 산림항공기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head> <tbody> <tr> <td>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td><td>21,808</td><td>30,233</td><td>17,472</td></tr> </tbody> </table> 자료: 산림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	21,808	30,233	17,472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	21,808	30,233	17,472								

1)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예방진화대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진화단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하여는 각각 특수업무수당(월 80,000원)과 위험수당(월 4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산불예방진화대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수에 위험근무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수) 추계기간 동안 2025년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2025년 기준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수: 총 9,604명
(국가 소속: 1,405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8,199명)
 - (위험근무수당 단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지급하는 위험수당의 2025년 단가 월 4만원을 준용하고,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산불예방진화대의 연간 사업기간이 2025년 기준 180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매년 6개월분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위험근무수당 단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 (국고보조율)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진화대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40%를 준용함

- 추계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예방진화대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115억 2,500만원(연평균 23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안 제37조)	2,305	2,305	2,305	2,305	2,305	11,525	2,305
국비	1,124	1,124	1,124	1,124	1,124	5,620	1,124
지방비	1,181	1,181	1,181	1,181	1,181	5,905	1,181

주: 1.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산불예방진화대의 규모와 운영방식이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2025년 기준 위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산불예방진화대의 규모·운영방식 및 위험근무수당 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예방진화대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국고보조율 40% 가정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산불예방진화대의 규모와 운영방식이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2025년 기준 위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산불예방진화대의 규모·운영방식 및 위험근무수당 단가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현황 및 임금·수당 지급체계

구분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2025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로기준법, 산림청 공무원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인원 및 배치 (2025년 기준)	총 9,604명	총 435명
	국가 1,405명 (27개 국유림, 3개 소속기관)	국가 435명 (27개 국유림관리소, 5개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8,199명 (17개 시·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60명 증원 예정)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연 180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25년 기준 일 80,240원	3,092천원/월 (기본급 2,801천원/월, 복지·명절·급식비)
산림재난 관련 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예산범위 내)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위험수당 (월 40,000원. 제1회 추경 반영)
2025년 예산 (단위: 백만원)	직 접	22,806
	보 조	
	합 계	

자료: 산림청

[참고자료 2] 산림청 보유 산림항공기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S-64	KA-32	수리온	AS350	Bell206
보유	50	7	29	3	4	7
20년 초과	22	1	20	—	1	—
30년 초과	12	—	3	—	2	7

자료: 산림청

[참고자료 3] KA-32 헬기 내구연한

구분	보유대수	최초 도입연도	내구연한	내구연한 도달연도 (연 150시간 운영 기준)
KA-32T(중형)	26대	1996년	6천시간 (비행시간)	2036년
KA-32A(중형)	3대	2006년	16천시간 (비행시간)	2118년

자료: 산림청

[참고자료 4] 내구연한이 있는 중요부품 목록

기종	품목 및 수량	중요부품 목록
S-64	44종, 129개	엔진, 기어박스, 유압서보, 회전날개, 회전축, 연료조절장치 등
KA-32	29종, 60개	엔진, 보조엔진, 기어박스, 회전축, 회전날개, 유압서보, 유압펌프, 하부 슬립링, 소화기, 주 착륙장치, 전방 착륙장치, 연료탱크, 냉각 팬, 유압호스 등
KUH	30종, 211개	엔진, 보조엔진, 기어박스, 회전날개, 회전축, 유압서보, 유압펌프 등
AS350	21종, 49개	엔진, 기어박스, 회전날개, 회전축, 유압서보, 시동발전기 등
Bell206	41종, 48개	엔진, 회전날개, 기어박스, 회전축, 유압서보, 연료 펌프, 연료조절장치, 연료 노즐 등

자료: 산림청